

제286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
제1차 회의 2022. 4. 25.(월)

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자치행정위원회

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

1. 제안경과

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
4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이용료 감면 기준 일부 수정 및 신설과 놀이체험시설의 설치 등 관련
내용을 현행화를 위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이용료 감면 기준 일부 수정 및 신설(안 별표 4)
- 나. 조문 현행화 정비 (안 제2조제3호, 안 제10조제1항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1
- 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참조)
- 다. 관련부서 : 보육정책과
- 라. 입법예고 : 2022. 3. 3. ~ 3. 23. (20일간) / 의견없음.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창의력 발달을 위하여 설치된 놀이체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,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3호 및 제10조제1항의 자구를 수정하고,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놀이체험시설 현행 7개시설 중에서 아이맘놀이터와 코코몽 팜빌리지를 각각 삭제하는 사항으로, 이는 아이맘놀이터의 무상 임대기간 ('12.11.26.~'22.11.25.) 만료에 따른 아파트 입주민 연장 반대로 본 시설의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며, 코코몽 팜빌리지는 2022년 2월에 재산관리관을 미래인재과로 변경하여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하고자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. 또한, 다너가정의 양육환경 지원을 위하여 별표 4 '이용료의 감면 기준' 의 감면시설과 감면율을 세자녀 이상을 둔 가족에게는 모든 놀이체험시설을 100% 감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 다소나마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주민 인식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,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.

다만, 코코몽 팜빌리지의 경우 2021년 10월 유기농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관리부서가 농생명정책과에서 보육정책과로 이관된 후, 4개월이 지난 금년도 2월에 미래인재과로 이관됨에 따른 정책의 혼선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(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

1. 예산상 조치 수반 요인

- 본 조례안의 예산상 조치 수반 요인으로는 일부 이용자*에 대하여 해당 놀이체험시설의 이용료를 추가적으로 경감(면제)하는 사항이 해당됨
(세입감소) : 제10조제2항 [별표 4]

※ *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세입(입장료 수입) 감소가 예상되나 그 금액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
 - 개정사항

기존	변경(개선)(안)
두자녀 이상을 둔 가족: 이용료 50% 감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두자녀를 둔 가족: 이용료 50% 감면 ◦ 주민등록상 시에 주소를 두고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: 이용료 면제

- 예산추계

과목	개정전 세입(연수입)		개정시 감소예상액
관)경상적 세외수입	○ '19년도 기준 (정상운영)	86,567천원	△약 10%(예상) ※ 연평균 1억원 미만
항)사용료수입 목)입장료수입	○ '21년도 기준 (코로나19 등 인원제한)	53,091천원	

4. 작성자

북지국 보육정책과장 박미경

(현행 조례)

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(제정) 2016.07.28 조례 제1379호

(일부개정) 2019.11.07 조례 제1702호

(일부개정) 2020.07.30 조례 제1762호

(일부개정) 2021.10.28 조례 제1890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영유아와 어린이 및 그 보호자에게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 7. 30.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”이란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에서 설치·관리하는 체험시설을 말한다. <개정 2020. 7. 30.>
2. “영유아”란 만 5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.
3. “어린이”란 초등학생 또는 만 5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.
4. “보호자”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친권자·후견인, 그 밖에 영유아와 어린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5. “이용자”란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을 체험하고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20. 7. 30.>
6. “이용료”란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의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요금을 말한다. <개정 2020. 7. 30.>
7. “재계약”이란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재계약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20. 7. 30.>

[제목개정 2020. 7. 30.]

제4조(놀이체험시설의 설치 등) ① 남양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영유

아와 어린이의 창의력 발달을 위한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(이하 "놀이체험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1. 7., 2020. 7. 30.>

② 놀이체험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20. 7. 30.>

제5조(놀이체험시설의 관리) 놀이체험시설은 시장이 관리한다. <개정 2020. 7. 30.>

[제목개정 2020. 7. 30.]

제6조(놀이체험시설의 운영위탁)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놀이체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7. 30.>

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, 재계약을 할 수 있다.

③ 놀이체험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가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,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7. 30.>

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[제목개정 2020. 7. 30.]

제7조(놀이체험시설의 기능) 놀이체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<개정 2020. 7. 30.>

1. 영유아와 어린이의 창의력 증진을 위한 놀이체험 공간 및 체험 프로그램 제공 <개정 2020. 7. 30.>

2. 보호자를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제공

[제목개정 2020. 7. 30.]

제8조(놀이체험시설의 운영시간 등) ① 놀이체험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관일을 제외하고 개방하여야 하며 놀이체험시설별 휴관일 및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. <개정 2020. 7. 30.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.

[제목개정 2020. 7. 30.]

제9조(놀이체험시설의 운영계획 수립) 시장은 놀이체험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7. 30.>

1. 개방계획

2. 연간, 월간, 주간 프로그램 운영계획

[제목개정 2020. 7. 30.]

제10조(이용료) ① 시장은 놀이체험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놀이체험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3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국가적인 행사나 기념일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7. 30.>

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감면 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4와 같다.

제11조(이용제한)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놀이체험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7. 30.>

1.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
2. 과도한 음주로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
3. 위험물이나 악취·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
4. 그 밖에 놀이체험시설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금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<개정 2020. 7. 30.>

제12조(안전관리) ① 놀이체험시설은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매뉴얼을 구성·운영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20. 7. 30.>

1. 놀이체험시설의 설치현황에 관한 정보 <개정 2020. 7. 30.>
2. 놀이체험시설의 보험가입에 관한 정보 <개정 2020. 7. 30.>
3. 놀이체험시설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정보 <개정 2020. 7. 30.>
4. 놀이체험시설의 위기발생 시 대처매뉴얼 정보 <개정 2020. 7. 30.>
5. 그 밖에 놀이체험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 <개정 2020. 7. 30.>

② 놀이체험시설에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었을 경우 그 기구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에 따른다. <개정 2020. 7. 30.>

부칙<조례 제1379호, 제정 2016.7.28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조례 제1702호, 2019. 11. 7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조례 제1762호, 2020. 7. 3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조례 제1890호, 2021. 10 .28.>(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
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남양주시 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
조례」는 폐지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
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.